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57호

발의년월일 : 2022년 6월 10일
발 의 자 : 정택진 의원
찬 성 자 : 이수옥, 공기환, 임정옥, 유영주 의원 (4명)

1. 제안이유

의회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 “1일”을 신설함. (안 별표 3)

나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“3일”로 함. (안 별표 3)

다.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“5일”로 함. (안 별표 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, 별표 1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3〕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1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※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

〔별표 3〕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〈신 설〉	
출 산	배우자	1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※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〔별표 3〕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**1**
출 산	배우자	1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**3**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**5**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※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**지방자치단체의 장**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**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**

③ ~ ⑬ (생 략)

〔별표 1〕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